

# 예산총칙

201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72,767,350	11,183,021
일반회계	345,904,579	10,377,137
특별회계	26,862,771	805,883
기타특별회계	26,862,771	805,883
상수도사업	1,586,477	47,594
하수도사업	1,006,712	30,201
수질개선	4,457,637	133,729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90,352	14,711
의료급여기금	585,742	17,572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465,612	13,968
소득특화사업	5,857,318	175,720
농공단지조성사업	310,800	9,324
공영개발사업	1,128,852	33,866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0,973,269	329,19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,720,427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
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

3. 재해대책 및 복구비